

[세금상식]

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주의사항

(국세청, 2007. 12.)

☐ 배우자공제

-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할 수 없음

☐ 부양가족공제

-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대상에 포함됨
-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음

☐ 자녀양육비 공제

-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

☐ 보험료 공제

-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
 -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정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,
 -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
(법인46013-3535, 96.12.18)

☐ 신용카드공제

-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

☐ 관련예규

-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(서면1팁-1562, 2006.11.17)
-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「소득세법」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(법규과-5426, 2006.12.18)